

#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93
----------	------

2025.12.4.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·제출자: 2025. 11. 10.(월) 광양시장

나. 회부일: 2025. 11. 10.(월)

다. 상정일: 2025. 12. 4.(목)

-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져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, 법적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에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구역 설치 의무화
- 민간자본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도모, 시민 편의성 증대,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여

## 나. 주요 내용

- 사업명 및 목적: 광양시 공영주차장 5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
- 설치기간: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 예정.
- 시설 규모: 총 5대의 충전기 설치 예정(급속 100kW 3대, 급속 50kW 2대), 현지실사에 따라 수량 및 사양 확정.
- 운영방식: 민간투자사업자가 5년간(1년 단위 자동연장) 개방형 운영, 충전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담당.
- 추진일정: 2025년 시설 설치 동의 및 사용허가 후, 2026년 전기 인입·수전설비 확인과 충전기 설치 단계별 추진.

## 3. 검토 결과

- 본 동의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%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설치하기 위함이며
- 광양시 공영주차장 5개소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절차상 하자 없는 적정한 사업으로 사료됨.
- 다만,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전기안전점검 책임 주체 명확화, 고장 및 불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, 사용기간 종료 및 철거 시 원상복구 의무 명시, 충전요금의 합리적 설정 및 시민 접근성 확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**5. 심사 결과:** 원안의결(출석위원 7명)

**6. 기타 사항**

○ 해당 없음.

붙임: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#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43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11.10.  
제 출 자 : 광 양 시 장

## 1. 제안이유(필요성)
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-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과 충전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필요  
- 충전 소요시간 : 급속 1시간, 완속 14시간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6, 제18조의7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함.
-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인동리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.

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광양시	부지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민 간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유지보수·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\*을 축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.

\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전기차충전기, 수소충전기 등)

※ 근거: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1호 마목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 업 명: 광양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
- 2) 설치기간(예정): 2025. ~ 2026.
- 3) 사업내용: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
- 4) 위      치: 광양읍 인동리 400 등 5개소 공영주차장
- 5) 주요시설: 전기차 충전시설\* 5대[급속(100kW) 3대, 급속(50kW) 2대]

\* 설치대상지 현지실사 완료 후 수량 및 충전기종(급속 또는 완속) 확정  
< 설치장소 및 수량(예정) >

구 분	계	급속(100kW)	급속(50kW)	비 고
대상시설(개소)	5	3	2	
충전기(대)	5	3	2	

## 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: 민간투자사업자
- 2)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5년(1년씩 자동연장)
- 3)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4) 운영방안: 개방운영

※ 근거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 
제11조의2제11항

## 다. 향후 추진계획

- 1) 광양시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: 2025.
- 2)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: 2025.
- 3) 전기 인입 및 수전설비 확인 등 설치사항 확인: 2026.
- 4) 전기차 충전기 단계적 설치: 2026.

## 3. 관련근거

-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(사회기반시설의 범위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 
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 
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8조의6  
(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), 같은 법 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)